기계설비건설협회 불법선거운동 및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및 판공비 횡령

- 2017년 3월부터 "기계설비법" 제정을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문재인을 지지하는 선거인단 수만명을 강제로 모집해주고,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정치자금을 후원해주고, "기계설비법"을 제정 하고 "기계설비의날"도 제정하였다. 이 당시 수억원의 판광비를 증빙 없이 지출하였음. (붙임 판광비 지출내역 참조) [(협회 호소문에는 종사자 30만 가족 수 환산시 100만명이라고 주장)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강요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원들에게 강제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라고 하고 쪼개기 정치자금을 후원하라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과 백종윤 회장이 지시)]
- * 법제정을 조건으로 선거인단을 강제로 모집하고 쪼개기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정치자금 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및 횡령, 배임이 될 수 있음
- 2019년 <u>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더 걷고 회원도 아닌 가스시설공사업</u> <u>제 1종 사업자에게 특별회비를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더 걷어서 쪼개기 정치자금을 후원</u>하고 불법으로 사용 하였음. (횡령 및 배임)
- 2022년 <u>기계설비법 개정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u> (정치자금법위반)
- <u>2021년 09월부터 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대</u> 통령후보 경선 선거인단 수만여명 강제로 모집 하고 선거운동을 하였음
- ※ 위와 같이 기계설비법을 제정해주어 국민들은 해마다 돈을 주고 <u>"기계설비성능점검"</u>을 강제로 받게 되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모집해주고, 불법쪼개기 정치자금을 후원해준 댓가로 <u>"기계설비의날"</u>을 제정해주고 <u>"기계설비법"</u>을 제정하여 기계설비 사업자들의 배만 부르게 하고 국민들은 <u>"기계설비성능점검"</u>을 받느라 등골이 휘어지게 되었다. 자기들이 기계설비설치공사를 해놓고 자기들이 해마다 성능점검을 돈받고 한다. 그리고 "기계설비성능점검하는 자"를 교육시킨다고 돈을 받고 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보다 더한 것 같다. 국민을 봉으로 알고 기계설비성능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기계설비성능점검 중 냉, 난방은 집주인이 춥게 하든 덥게 하든 집주인 마음이고, 물이 졸졸 나오든 콸콸 나오든, 변기물이 쫄쫄 내려가든 콸콸 내려가든 그것도 집주인 마음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기계설비성능점검을 해마다 1년에 한번씩 돈을 주고 받으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누가 뇌물을 받고 법을 제정해주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야합니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정관을 위반하고 성창진 부회장이 10년째 재직하고 있으며 판공비는 협회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성창진과 회장이 증빙없이 사용한 판공비를

개인소득(월급, 성과급)으로 처리하여 횡령을 하였으며, (증빙없이 사용한 수억원은 불법쪼 개기정치자금으로 사용 되었기에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 협회 김동오가 회장으로 재직시 공금을 횡령을 했다고 사무처장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임 시켰다. 횡령은 김동오 회장이 했는데 사무처장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임시킨 것이다.

현재 기계설비건설협회 본회 감사로 재직 중인 김동오를 파면하고 횡령죄로 고발해야한다 왜 죄없는 사무처장을 해임시키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 산하단체가 북한의 공산당보다 더 독재를 하고 있는 것같다. 감독기관은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인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 없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2023년5월 2억원이 넘는 해외골프 여행을 하였다. 회원들이 낸회비로 1인분에 45만원하는 와규를 먹고 일본 전통소주를 먹는데 한끼 식사비로 3천만원을 사용하였다 협회 예산 어디에도 골프치는 예산은 없다. 무슨돈을 어떻게 횡령을 했는지 배임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야한다.

매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부동반하여 1박2일 골프를 치고 있다 부인도 회장인 것 같다. 협회비로 부인까지 데리고 호텔에서 자고, 골프를 치고 여행을 하고 있다.

협회 본회 간담회 등 회의를 하면 시·도회장들이 각자 협회에서 출장비를 받아먹고 본회에 와서 또 출장비를 받아먹고 있다. 출장비를 두 번 받아 먹고 있는 것이다. 설비협회 회원들이 봉이다. 감독 기관이 두눈을 꼭 감고 덮어주고 서로 공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단체를 기계설비의날 기계설비건설협회를 상을 준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과 부정으로 썩을대로 썩은 기계설비건설협회를 해산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판공비·정보비 지출내역)

(단위: 원)

년도	판공비	정보비	특별회비	회원 1인당
			(가스제1종)	분담금(10만원)
2017	150,000,000	200,000,000	-	-
2018	200,000,000	250,000,000	97,000,000	500,000,000
2019	200,000,000	250,000,000	95,000,000	500,000,000
2020	200,000,000	250,000,000	90,000,000	500,000,000

2021 ~2022	480,000,000	-	90,000,000	500,000,000
2023.	120,000,000	인건비에 포함되어	90,000,000	_
1~5월 합계	1,350,000,000	있는 판공비제외 950,000,000	462,000,000	2,000,000,000

- ※ <u>총합계 4,762,000,000</u>원을 <u>2017년부터 2023년 5월</u>까지 집행한 금액 중 증빙이 없는 지출한 금액은 불법쪼개기 정치자금으로 후원하고, 회장이 사적 사용으로 횡령
- 2017년 "기계설비법" 제정을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협회에서 수 만명을 모집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선대본부에 전달
- 2021년 9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 수 만명을 모집 (이재명 후보)
 - * "법 제정"을 조건으로 "협회"에서 선거인단을 수 만명을 모집하여 제3자 정보제공 동의도 안받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에 전달하고, 쪼개기 정치자금을 후원해주고 기계설비법이 제정되고 기계설비의 날도 제정되었음.
 -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 청탁 로비)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였음)
 - ③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의 위탁사업을 하는 단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였음)
 - ④ 강요죄 (회장이 강제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모집하게 하고,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하라고 강요)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협회 정관에 회원도 아닌데 강제로 회비(입회비, 기본 회비, 통상회비, 특별회비)를 매년 수십억원씩, 수십년간 수백억원을 강제로 부당하게 강제로 걷어서 불법으로 사용(약300억원) 사기죄
- 기계설비건설협회 정관(회원)
- **제9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협회의 회원은 <u>정회원, 준회원,</u> 특별회원 및 등록회원 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2021. 3. 25. 개정>
 - 1. **정회원은 기계설비사업자로서 정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u>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내지 제3종을 등</u>록한 자로서, **준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자 <2021. 3. 25. 개정>
- ※ 협회 정관에 회원도 아닌 <u>"가스시설시공업 제1종"</u> 사업자에게 매년 9천여 만원을 2018년부터 걷어서 사용(약 4억 6천만원)

※ 기계설비건설협회 규정(판공비 지급규정)

제4조(사용자) 기관운영판공비 및 수시판공비는 임원이, 정보비는 임원, 부서의 장 및 팀장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u>협회업무와 관계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지출에</u>한한다.

※ 판공비는 월급(개인소득)으로 가져갈 수 없는데 월급으로 가져가고 소득세를 낸것은 횡령임

● 국토교통부 감사 판공비 지출내역 (2021.01~2023.05)

(단위: 십만원)

재무재표	집행금액			비 고	
/川十/川亜	정달홍	성창진	조인호		
2021년 결산	1,100	600	-	7천만원 초과 지출 (판공비 지급	
1,000	1,100			규정 위반)	
2022년 예산	2.400	700	_	1억 9천만원 초과 지출하여 월급	
1,200	2,400			으로 처리 (판공비 지급 규정 위반)	
2023년 예산		200	920	2022 01. 05의까지 지ᄎ그애	
1,200	_			2023.01~05월까지 지출금액	

- 2021년도 결산서에 판공비 결산금액이 1억원인데 지출한 금액은 1억 7천만원을 지출하여 초과 지출한 7천만원이 결산서 반영되어있지 않음
- 2022년도 예산서에 판공비 예산이 1억 2천만원인데 지출한 금액은 3억 1 천만원을 지출하여 1억 9천만원을 초과 지출하였음

2023년 6월 기계설비건설협회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처분자료) 임